

(유권해석) 「토지보상법 시행령」 제37조제3항에서의 지가변동률은 용도지역
별 지가변동률이다.

[국토부 2018. 9. 11. 토지정책과-5826]

질의요지

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의 변동된 경우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지가변동률은 용도지역별
지가변동률인지 평균지가변동률인지 여부

회신내용

지가변동률은 「토지보상법 시행령」 제37조제1항에서는 「토지보상법」 제70조1항에서 규정하고 있
는 “대통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”을 지역 및 종류 두 가지로 나누어, 지역은 ‘비교표준지가 소재
하는 시·군 또는 구’로 규정하고, 종류는 용도지역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2항 및 제3항
은 ‘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·군 또는 구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조항으로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
한 비교표준지가 소재하는 시·군 또는 구의 지가의 변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용도지역별
지가변동률이 아니라 평균 지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.